

종 법(宗法)

계단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법은 종헌 제11조에 의하여 계단의 설치 계사의 자격과 수계절차를 규정하여 수계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 본종 중앙계단의 설치 및 계단의 인허가 사무는 총무원 교무부에서 관장한다.

제3조 계단 경비는 계단사찰 설계기관 또는 수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조 본종의 계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득도계단 - 득도자에게 득도계를 설한다.
2. 대승계단 - 승려에게 대승계(육바라밀)를 설한다.
3. 신도계단 - 신도에게 삼귀의계 오계 또는 십선계를 설한다.
4. 보살계단 - 승려 및 신도에게 보살계를 설한다.

제5조 1. 본종의 득도 계단은 총무원 또는 각시도 교구에 설치한다.
2. 득도수계는 전국합동 교구합동으로 득도식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다.
3. 대승계단에서 대승계를 봉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 연령 23세 이상인 자.
나. 득도계를 수지하고 3년 이상 경과한 자
라. 은사가 추천한 자.

제6조 1. 신도계단은 총무원 분원 각 사찰에 설치할 수 있다.
2. 보살계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 계단 설치 승인 신청서를 총무원에 제출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살계는 승려 신도 공히 봉수할 수 있으므로 많은 수계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난.

제7조 1. 본종 계단에는 삼사 칠증사를 둔다.
2. 삼사와 칠증사는 종정의 위촉을 받은자에 한한다.
3. 계단장은 전계아사리를 당연직으로 하며 종정이 위촉한다.

제8조 삼사 칠증사는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승랍 20년 이상인 자
2. 법계는 율에 정통한 자.
3. 법과 율에 정통한 자
4. 지계수덕 하는 자.

제9조 각 계단의 삼사와 칠증사는 설계규모와 성격에 따라 종정이 위촉한다.

제10조 1. 계단 설계시에는 삼사와 칠증사를 증명으로 여법히 설계해야 한다.

2. 설계 규모에 따라 삼사만으로도 설계 할 수 있다.

제11조 1. 본종의 계단에서 전계할 때에는 설계와 수계로서 전래의 고규에 준한다.

2. 득도계는 사미 10계를 원돈계는 육바라밀계를 보살계는 보살 10중대계와 대승보살 48경계를 설계한다.
3. 본종 계율의 전거 경전은 범망경으로 한다.

제12조 전계사는 설계가 종료되면 수계자에게 계목 계첩을 수여하고 득도계를 수지한 자에게는 계단장이 득도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13조 득도계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계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계지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호적등본 1통
4. 신원증명서 1통
5. 은사 추천서 1통

제14조 승려로서 대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계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계지원서 1통
2. 추천서(주지 각급 중무기관장) 1통

제15조 신도계 보살계를 받으려는 자는 수계지원서를 계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단장은 신청된 수계원서에 의하여 수계자격을 심사한다.